

■ EU, 에코라벨 개정 법률 승인

○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EU 에코라벨 제도가 개정됨

- EU 에코라벨 제도는 1992년에 법률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음
- 1996년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개정안이 제출된 후 유럽의회, 각료회의 및 집행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수정을 통해 지난 주 최종 승인되었음
- 검토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은 개별 국가 혹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마크와의 관계, 이해관계자의 참여 문제, EU 에코라벨 사용료, 제도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 등이었음

○ 주요 개정 내용

- 에코라벨 적용범위를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함
 - 제품뿐만 아니라 기준을 만족하는 서비스도 에코라벨 부여가 가능함
 - 에코라벨 사용자가 공급업체, 소매업체 및 제품 생산업체로 확대됨
- 개별국가에서 운영중인 환경마크와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나 EU 에코라벨과 개별국가에서 운영 중인 환경마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함
 -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에코라벨 제도가 개발된 후 독일의 Blue Angel, 노르딕 지역의 Nordic Swan과 같은 개별국가 환경마크 제도를 점차 소멸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각료회의에서 이를 거부하였음
 - 유럽의회에서는 EU 에코라벨의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전제로 유럽집행위원회의 계획을 지지하였으나 2차 검토과정에서 독립적인 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함
- 비정부기구(NGO)의 참여 확대 및 EU 에코라벨 사용료의 상한선을 규정함
- 소규모 기업과 인증된 환경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됨

○ 향후 전망

- 현재 EU 에코라벨 부여 대상 제품군은 15개이고, 9개 제품군이 검토되고 있으며, 본 개정과 함께 서비스를 포함한 대상 제품군의 확대될 것임
 - 부여 대상 제품군 : 세탁기, 냉장고, 화장기, 식기세척기, 토양 개량제, 침대 매트리스, 실내 페인트, 신발류, 섬유제품, 개인용 컴퓨터, 세제, 식기세척용 세제, 복사지, 백열전구, 휴대용 컴퓨터
 - 부여 대상 검토 제품군 : Hard surface cleaners, Sanitary cleaners, 식기 세척제, 타이어, 가구, 진공 청소기, TV, 바닥 덮개, 관광용 숙박설비, 배터리, 쓰레기 봉투, 개조한 종이 제품
- 개별국가 및 지역의 환경마크를 EU 에코라벨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제품정책(IPP)등과 연계하여 EU 에코라벨의 역할이 점차 강화될 것임

이 광 원(02-3669-4310, kwlee@hri.co.kr)